



## 업무 복귀:

건강, 안전, 모욕과 즐쁨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실업 지원 및 직장 보호

### 일반 원칙

뉴저지의 실업보상법("UCL")은 "본인의 과실 없이 실업하였으며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 및 시간이 있는 근로자의 곤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Medwick v. Board of Review*, 69 N.J. Super. 338, 340 (App. Div. 1961). UCL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뉴저지주의 실업 보험("UI") 시스템에서는 **근무에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본인의 과실이 아닌 실업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어야 합니다. 주 항소 법원의 다양한 관점에서는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은 임시 구제책이라고 보아야 하며 "나태함의 파도에 편안히 몸을 맡긴 채 유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기는 마취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Krauss v. A. & M. Karagheusian, Inc.*, 24 N.J. Super. 277, 282 (App. Div. 1953).

이러한 일반적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본 안내 문서에서 당국이 설명할 두 가지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급여를 신청하고 이러한 예외 사항을 충족할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실업하지 않았거나 근무할 능력과 의지 및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UI 급여를 받게 됩니다**. 안내에서는 또한 이러한 법률 원칙이 CARES 법에서 만든 추가 급여 프로그램이자 다양한 코로나 관련 시나리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대유행 실업 지원("PUA")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설명합니다.

### 선의를 위한 자발적 퇴사 - 보건 및 안전 우려

첫 번째 예외 사항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두는 개인은 UI 급여 수령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직무가 원인인 선의"로 일을 그만 두게 되면 UI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N.J.A.C. 12:17-9.1. 이러한 선의의 한 가지 좋은 예는 개인이 "근무 환경이 너무나 불안전하고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하여 이러한 근무가 원인이 되는 선의에 해당"하여 일을 그만 둔 경우입니다. N.J.A.C. 12:17-9.4.

선의로 일을 그만 둔 것인지 증명해야 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이는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당국 법원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족"만으로는 선의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Medwick v. Board of Review*, 69 N.J. Super. 338, 345 (App. Div. 1961). 불만을

제기한 근무 조건은 "개인이 고용을 해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을 그만 두기 전에 직원은 고용주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두고 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고용을 해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근무 환경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UI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실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며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청구인이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안전한 업무 현장을 확립하고자 하는(전염병 준비 및 대응 계획 마련, 자택 근무 옵션 제공, 추가 손 세정 장소와 손 세정을 위한 휴식 시간 제공, 추가 소독 및 접촉이 잦은 구역의 빈번한 청소 제공,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 제공, 사용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가이드라인 준수 등) 고용주의 전반적인 조치.
2. 직업안전 위생관리국, 질병 통제 센터 및 기타 관련 연방 기관의 안내 준수.
3. 뉴저지 노동인력개발부, 보건부, 뉴저지주 경찰 및 기타 관련 주 기관의 안내 준수.
4. 산업 그룹 및 협회 안내 준수.
5. 주지사의 행정 명령 준수.

*이 목록은 유일한 것이 아니며 판단 시 당국에서 추가적인 요소와 출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적합한 업무 거부 - 보건 및 안전 우려

**두 번째 예외 사항은 근무 복귀를 지시받거나 또 다른 고용 제안을 받았으나 거부하는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주의 UI 시스템에서는 근무와 구직 시도에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적절한 사유 없이 "적합한 근무" 제안을 거부하게 되면 해당 주와 그 직후 3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거부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법에서는 "적합한 근무"를 "보건, 안전 및 도덕에 연관된 위험,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이전 훈련, 경험과 이전 수익 및 직원 혜택, 개인의 고용 기간, 개인의 통상적 직업의 업무 확보 전망과 출퇴근 거리"와 같은 고려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N.J.S.A. 43:21-5(c); N.J.A.C. 12:17-11.2.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적합한 근무"를 거부하고 급여를 수령할 수 없지만 근무에 높은 수준의 보건 및 안전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근무" 수락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가 적합하지 않은지 증명해야 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이는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청구인은 결핍이 "청구인이 직무를 수락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N.J.A.C. 12:17-11.2. 이러한 고려 사항은 "관련 특정 개인에 대한 존중"을 통해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N.J.A.C. 12:17-11.2. 근무를 거부하기 전에 개인은

고용주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실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며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청구인이 기대되는 고용이 건강과 안전에 위험 수준이 높아 보여 결과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할 때, 당국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1. 안전한 업무 현장을 확립하고자 하는(전염병 준비 및 대응 계획 마련, 자택 근무 옵션 제공, 추가 손 세정 장소와 손 세정을 위한 휴식 시간 제공, 추가 소독 및 접촉이 잦은 구역의 빈번한 청소 제공,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 제공, 사용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가이드라인 준수 등) 고용주의 전반적인 조치.
2. 직업안전 위생관리국, 질병 통제 센터 및 기타 관련 연방 기관의 안내 준수.
3. 뉴저지 노동인력개발부, 보건부, 뉴저지주 경찰 및 기타 관련 주 기관의 안내 준수.
4. 산업 그룹 및 협회 안내 준수.
5. 주지사의 행정 명령 준수.

*이 목록은 유일한 것이 아니며 판단 시 당국에서 추가적인 요소와 출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자발적 퇴사/적합한 업무 거부 및 CARES 법

위에 설명한 대로 청구인이 적절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적절한 사유 없이 "적합한 업무" 제안을 거부하면 UI 급여 수령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두거나 "적합한 업무" 제안을 거부했으나 CARES 법에 규정된 방식 중 하나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한 영향을 입은 경우에는 대유행 실업 지원("PUA") 프로그램에 의해 급여 수령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PUA 급여는 일반 UI 급여(청구인의 평균 주당 임금의 60%에서 최대 주당 \$713, 2020년 7월 말까지 주당 \$600의 추가 일시금)와 같습니다.

즉 UI 자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청구인도 PUA 수령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PUA 자격을 충족하려면 청구인은 주법에 따라 UI 급여 자격이 없었거나 달리 근무를 할 수 없었거나 실업했거나 부분적으로 실업했거나 다음 코로나 관련 사유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각 주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 a.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 받았거나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해 의학적 진단을 요청한 경우
- b. 개인의 가구 구성원이 코로나19로 진단받은 경우
- c.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받은 가족 구성원이나 가구 구성원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개인의 경우
- d. 개인이 일차적인 돌봄 책임이 있는 아동 또는 기타 가구 구성원이 코로나19 공공 보건 응급 상황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폐쇄된 학교나 기타 시설에 갈 수 없거나 그러한 학교나 시설 관리에 개인이 필요한 경우

- e. 코로나19 공공 보건 응급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로 부과된 격리 조치로 인해 개인이 고용 장소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 f. 개인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 사항으로 인해 의료 제공자로부터 자가 격리를 하라는 조언을 들어 고용 장소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 g. 고용 행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직업이 없거나 코로나19 공공 보건 응급 상황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는 경우
- h.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가구주가 사망하여 가구의 가장 또는 주요 지원을 맡게 된 개인의 경우
- i.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개인의 경우
- j. 코로나19 공공 보건 응급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고용 장소가 폐쇄된 개인의 경우
- k. 이 섹션에 따라 개인이 실업 지원에 대해 장관이 수립한 추가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황이 바뀌고 이러한 코로나 관련 사유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면 청구인은 계속해서 PUA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CARES 법의 조항에 대해 당국에서 받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 보육 우려 사항

### 질문 1

이전 고용주가 근무를 재소집했거나 또 다른 적합한 근무 제안을 받았지만 아직 자녀의 학교나 보육센터가 코로나로 인해 폐쇄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해당 개인은 PUA 자격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적합한 업무 제안을 거부하면 일반 UI 급여 자격이 박탈되지만 해당 개인은 위 (d)번 사유에 따라 PU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일차적인 돌봄 책임이 있는 아동 또는 기타 가구 구성원이 코로나19 공공 보건 응급 상황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폐쇄된 학교나 기타 시설에 갈 수 없거나 그러한 학교나 시설 관리에 개인이 필요한 경우"

연방 안내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된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자녀의 보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구의 다른 개인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두 번째, 자녀나 가구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주요 돌봄 책임"이란 개인이 자녀나 다른 구성원의 돌봄을 위해 개인이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자격은 학교 폐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며 코로나로 인해 폐쇄된 보육 시설 및 여름 캠프 등 다른 "시설"에도 확장됩니다. 네 번째, 학교와 관련해 PUA의 자격은 2019~2020학년도에 일반적인 폐쇄일을 지나서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경우 PUA에 대한 자격이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만 돌봄 제공에 "지속적이며 일관적인 주의가 필요"하여 개인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은 PUA 자격 대상이 됩니다.

## 보건 및 안전 우려 사항

### 질문 2

이전 고용주가 근무를 재소집했거나 또 다른 적합한 근무 제안을 받았지만 업무 복귀 시 본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보건 및 안전 우려 사항으로 적합한 업무 제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전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특정 코로나19 보건 및 안전 우려 사항이 있는 개인은 위 (f)번 사유에 따라 PUA 자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 사항으로 인해 의료 제공자로부터 자가 격리를 하라는 조언을 들어 고용 장소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특정한 우려 사항은 중요합니다. 연방 안내 문서에서는 추가 사항 없이 "코로나 노출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 사항"만으로는 PUA 자격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안내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에게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은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코로나 양성 검사 결과를 받거나 코로나로 진단 받은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경우, 그리고 의료 제공자로부터 잠재적인 바이러스 전파를 위해 자가 격리하라는 조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는 기저 질환이 있는 "고위험"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인이 "개인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평균보다 높은 위험을 피하도록" 의료 제공자로부터 자가 격리하라는 조언을 받은 경우 PUA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손상된" 개인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질환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완전한 목록은 **CDC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NJ.GOV/LABOR